

바느질 협업자의 노트: 윤민지^[1]

기록 1. 매우 사적인 것과 지극히 공적인 것의 만남

기록 2. 법 조항 타임-라인에 대한 관객의 반응

관객이 기꺼이 벗어 건넌 옷을 받아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고유한 체취가 느껴진다. 그 체취에는 그가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혹은 향수의 잔흔, 특수한 작업 환경을 예상하게 하는 향, 계절에 맞닿은 바람의 향과 같은 것들도 함께 남아 있는데 그토록 여러 가지 향이 나(작업자)의 감각을 자극한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특유의 습관들도 보인다. 예를 들어, 한쪽이 조금 더 닳아 있는 소매의 끝은 그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은근하게 알려준다. 바지의 밑단을 살피면 발의 안쪽 방향으로 헤진 정도를 따라 비스듬한 걸음걸이도 보이고, 섬유의 상태를 보면 얼마만큼의 세월 동안 옷을 입어 왔을지도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한 개인의 매우 사적이고 은근한 흔적이 묻은 옷 한 벌이 나에게 건네 진다. 나는 작업자로서 그 흔적 위에 공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시’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작업물(옷)에 부착된 법 조항의 공공성을 돌이켜 본다. 여기서 옷은 전시장 밖에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공공의 장소가 된다. 수공예적 노동인 ‘바느질’이라는 행위를 통해 한 개인의 참여가 공적인 공간에서 재맥락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국가가 개입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다.

기록 3. 나의 삶과 “2008 호주제”^[2]

다수의 참여자가 선택한 타임-라인 밴드 조항은 개인적 관심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남성의 참여자 보다 여성의 참여자가 더 많았던 것은 관객의 성비로 여성이 더 많았던 것이 그 이유이다. 그리고 각 개인의 선택을 통해 드러나는 ‘관심있’ 법 조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대체로 “1962 군형법 제92조 6항 - 동성애 처벌법”, “2008 **호주제**”, 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2019 낙태죄 헌법 불합치”, “1968 주민등록법 시행령”, 그리고 “2019 **장애인 등급제**” 와 “1999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강제불임화**”가 가장 적게 선정되었다는 것이 촬영된 기록물을 확인해 보고 알게 되었다. 이러한 빈도순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며 가장 빈번하게 논쟁 되는 법 조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들이 선택한 타임-라인 조항은 작업의 재료인 옷을 통해 자신의 취향과 신념 등을 대변하게 되고, 이러한 선택은 공동체로부터 비난받거나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상식의 범주 안에서 안전하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개인적인 견해를 어렵듯이 추론해볼 수 있었던 것은

^[1] 2019년 금천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와 2020년 더레퍼런스 <개인의 자리> 전시에서 <타임-라인: 국가통제코드> 작업의 바느질 협업자로서 참여하였다.

전시장에서의 경험이 근간이 되었다.

아마도 “2008 **호주제**”와 “2019 **장애인 등급제**” 두 가지 조항이 선정된 것은 그 조항의 ‘글자 수의 짧았음’에도 있었던 것 같다. 전시 현장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 건너게 될 줄 몰랐던 관객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덜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바느질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다 보면 섬유에는 구멍의 흔적들이 필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언제라도 떼어낼지도 모르는 그 라벨의 흔적이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옷의 바깥보다는 옷의 안감에 바느질을 원하였다. 전시장을 나가면 수많은 공공장소에서 법 조항 타임-라인 라벨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는 표정 또한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참여의 범위는 참여자가 옷에 타임-라인 밴드를 단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만 정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참여자의 태도가 전시장을 떠나 공공장소를 활보하게 될 때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자신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작업 참여의 적극성은 타임-라인 밴드를 달고 다니는 사람에게만 있지 않게 된다.

한편으로 전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관객일수록 옷의 바깥 중에서도 더 잘 보일 수 있는 곳 또는 가장 은연중에 잘 드러날 수 있는 곳에 라벨이 남겨지기를 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동작업자의 역할 밖에서의 ‘나’는 그러한 다양한 선택과 입장들을 헤아려 볼 때, 그중에서도 ‘은연 중’의 잘 드러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는 관객에게 더 공감이 가기도 하였다. 국가, 그리고 법의 조항이 개인을 통제하는 방식이 것처럼 가시적/비가시적인 상태, 의식적/무의식적 상태로 섞여 일상 가운데 은연히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니, 더 솔직하게는 것처럼 다양한 선택을 하는 관객 덕분에 작업자인 동시에 관객(참여자)으로서의 ‘나’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관객과도 공감할 수 있었다.

기록 4. 규격화/표준화된 의류

^[2]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다. (….)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호주제는 그동안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또한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1977년, 1990년, 2002년에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5년에 이르러 마침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출처: 국가기록원)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데에는 한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 안에서 한 시민으로서 살아온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그 중 다른 어떤 조항보다도 법의 개입과 통제, 생성과 폐지의 과정 자체를 적극적으로 경험한 사례로서 2008년에 폐지된 호주제 조항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나는 법과 개인의 충돌과 변화 가운데에 있었던 장본인으로써 법 조항이 결코 각기 다른 개인의 삶을 이해하거나 포용하는 방식으로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두 살 때 가출한 아버지의 흔적을 이름의 머리말에 두고, 나는 그가 ‘부재하므로 더욱 강력히 존재’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동안 사회제도가 포섭과 배제라는 방식으로 어떻게 소수의 타자를 생성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현실에서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회 안에서 개인의 삶을 규제하는지 오롯이 이해할 수조차 없었던 매우 어린 시절부터 가능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분류되어 제도의 눈가림을 가장한 배려의 상황 가운데 자주 노출되는 것을 보았다. 나의 경우, 어떤 선생님은 등교 첫 주부터 아이들이 모두 함께 있는 교실에서 생활기록부 안에 아버지의 이름을 채우는 칸이 공란으로 비어 있는 이유에 대해 순진한 표정으로 질문하곤 했다.

법 조항은 사회-문화적인 제도와 인식의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고, 법의 적용으로 일반화되면서 개인을 ‘사회적 타자’로 포섭하거나 배제하는 일을 당연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편성을 획득하고 타자로 분류되어 본 적이 없는 다수가 익힌 포섭의 몸짓은 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주어진 제도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소수의 타자를 만들어갔다. 한편으로, 법 조항에 근거한 국가통제는 사회에서 구축되는 관계망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다수를 만들고 이들은 법 조항이 소수자를 낙인찍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사실이다. 법조항이 지닌 편견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법이 철폐되기 위해 고심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즉, 제도가 바뀌어도 사회구성원들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일종의 문화 지체 현상은 만연했다.

지금까지 호주제가 폐지된 이래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모계의 성을 따라 나의 성을 바꾼 지도 8년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이 법의 폐지가 사회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상식으로 자리 잡지 못했음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가출한 뒤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부친의 존재가 발견되고 부친상을 치른 후 나는 학교에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며 부친의 성과 나의 성과 다른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라는 또 다른 민원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만 했다. 다수의 ‘의아함’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수가 보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 적용을 설명하기 위한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마치 오랜 시간, 밧줄로 기둥에 발이 묶여 자란 코끼리가 밧줄을 거뜰히 끊어낼 수 있을 만큼 자란 후에도 길들여진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법의 통제와 규율 속에 길들여진 우리는 그것이 폐지되었음에도 오랜 시간 길들여진 불평등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은 사회적 규율이 얼마나 개인의 (무)의식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전시가 사회-문화 전반적으로 고질적인 현상이라고 여겨진 무관심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한 관객으로서 다른 관객에게 말 걸기를 시도해본다.

기록 5. 바느질, 공동 작업의 수행

전시 현장에는 자신의 옷을 벗어 공동 작업자에게 잠시 맡겨두는 동안 같이입을 수 있는 여벌의 대어 의류가 임시로 구비되어 있었는데, 그 의류들 또한 전시장의 부가물로서 단순히 대체적인 도구의 역할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의류들은 한국인의 신체 규격에 맞게 규격화/표준화된 치수(XS, S, M, L, XL, XXL)가 기재된 라벨을 달고 있었고, 그것은 법 조항이 개인을 범주화하고 규율 속에 재배치하듯 신체를 프레임화하고 있는 방식의 표기가 반영된 것이다. 더불어 그 규격은 국가마다 다른 기준으로 표준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때, 법 조항이 지니는 형식과 더욱더 다르지 않다. 대어 의류들 또한 전시의 맥락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허수가 될 수 있는 통계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법 조항의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맡겨둔 옷의 작업 결과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라벨이 옷의 재단선을 따라 바느질되어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개인과 신체 간의 불가분 관계는 바느질된 옷들을 통해 통제의 규율이 체화된 모습으로 공론의 장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기록 6. 바느질, 공동 작업의 수행

하나의 작업대 위에서 여러 명의 작업자가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는 방식은 단순히 역할의 분배, 공감의 실천, 주어진 일의 이행,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 외에도 그 수행과정 자체를 통해서 다시금 ‘개인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구조였다는 생각이 든다. ‘공동’과 ‘개인’은 절연의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를 침범하고 탈피하기를 반복하는 경계 속에서 자리한다. 내부의 관점에서 공동 작업자인 우리는 바느질의 모양, 방식만을 기준으로 하여도 서로를 확연히 구별할 수도 있었지만, 외부자로서의 관객의 시선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돌아보면 우리는 누구나 ‘개인’일 뿐인데, 효율의 명목을 가질 때 군집으로 분류되고

의미화되는 것은 아닐까. 마치 이 작업의 일부 내용이기도 했던 “1968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한국에서 자리 잡게 된 배경^[3]처럼 말이다. 한편으로, 바느질 대부분은 재봉틀 사용이 아닌 손바느질을 통해 관객과 관계 맺기를 시도하며, 어쩌면 매우 비효율적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시도의 과정 자체가 오히려 작업자와 관객 사이, 작업자와 작업자들 사이에 매우 친밀한 감정을 자아냈다는 생각이 든다. 쌓인 작업의 결과물들을 사진으로써 다시 찬찬히 보고 있으니, 이 모든 시간과 의미가 하나의 켈트처럼 다가온다. 서로 다른 다수의 개인이 만나, 모두 각자의 이야기와 의도로 이 작업에 스며들었고, 그 스며들이 다시 하나의 전시를 향하고 있다.

기록 6. 전시 이후의 나의 옷장

작업은 종료되고, 우리는 모두 전시장 밖으로 걸어 나온 관객이 되었다. 흩어진 좌표 안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개인은 다시 사적이고 내밀한 장소로 그 옷을 옮겼다. 그리고 조금씩 서로에게서 잊혀 가고 있다. 누군가는 이미 옷에 붙여진 라벨을 떼어 냈을 수도 있고, 의도치 않았지만 여러 번의 세탁을 통해 흐릿해진 흔적을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선명한 표시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러한 시간을 짐작해볼 때 이 작업과 전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여정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 옷장 안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이 라벨^[3]의 옷을 보며, 나 또한 나의 삶을 통제하며 여전히 유효한 법과 투쟁이 필요한 법 조항들에 대해 낯선 의식을 가진다. 만약 이처럼 흩어진 개인들이 아직 라벨을 소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 ‘어떻게’, ‘왜’ 그 라벨을 소거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들이 어느 한 곳에 모일 수 있다면 그 진술한 목소리들을 꼭 들어보고 싶다. 바로 그 목소리들이 이 전시의 끝없는 여정에 대한 답변일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법과 국가는 모든 개인의 자리를 고려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개인의 자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수긍하고 있을까.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 낯설어져야 하고, 낯섬이 소외나 통제의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익숙함과 낯섬 사이를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물들어 가기를 바라본다.

[3] 정부가 1970년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목적일 명기하였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인력관리는 국가 건설의 번영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자주 국방이라는 중대한 시정 목표가 있는가 하면 국민 전체가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구성원의 힘을 한곳으로 뭉치기 위해서는 인력의 적절한 관리가 절실히 요청된다. (...)” (우광선, 1970)



그림 1. <나의 옷장에서 다시 읽히는 타임-라인 라벨>, 2021
Fig.1. My jacket with the *time-line* label in the closet, 2021